

의안번호	제 35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7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
----------	-----

발의연월일 : 2023년 7월 4일

발 의 자 : 박병천·김현문·이정범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세계화·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함께 교육도 국가 간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속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외국과의 교육 관련 교류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이에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국제교류협력’ 정의 규정에 ‘국제교류협력’을 수정 보완하고, ‘학생’,

‘교육지원’, ‘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4조)

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바.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사. 충청북도의회 ‘동의’ 규정을 ‘의결’로 변경함(안 제7조)

아. ‘교류촉진 및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및 지원’사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자. 국제교류협력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 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교류협력사업
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교류 프로그램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4.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교류협력 행위나 절차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의 외국과 교류정책 추진 사업 확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프로그램 운영비, 항공료, 숙박비, 일비, 임차료 등) 소요

3. 관련 조문

-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은 2023-2027년까지 5년으로 산정
- 2)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 1) 최근 5년간(2018-2022)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 지원 현황

국제교류 사업명 (프로그램명)	담당부서	연도	대상 국가	국제교류협력처 (기관명)	참여 대상	예산
이러닝 세계화(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방문연수	미래인재과 (현.창의특수교육과)	2018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국교육원 및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교원	73,000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종료)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8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학생	270,000천원

국제교류 사업명 (프로그램명)	담당부서	연도	대상 국가	국제교류협력처 (기관명)	참여 대상	예산
베트남하노이시교 육청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베트남	하노이시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15,300천원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38,000천원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21,900천원
이러닝 세계화(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연수	미래인재과 (현.창의특수교육과)	2019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국교육원 및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교원	73,000천원
전환기교육 해외파견 특별연수(종료)	학교혁신과 (현.중등교육과)	2019	덴마크, 아일 랜드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더블린교육연수원	교원	110,000천원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교류연수 (종료)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9	몽골, 캄보 디아, 필리핀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교원	30,000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종료)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9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학생	270,000천원
베트남하노이시교 육청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20	베트남	하노이시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24,000천원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초청(종료)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20	러시아	고려인 민족학교	학생 및 교직원	27,000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종료)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20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학생	270,000천원
이러닝 세계화(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방문연수	미래인재과 (현.창의특수교육과)	2022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국교육원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교원	73,000천원

2) 향후 5년간(2023-2027) 비용 추계: 39,126,385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육청(본청)	2,001,990	2,001,990	2,001,990	2,001,990	2,001,990
지역특화인재양성 (교육지원청)	235,218	2,974,268	2,974,268	2,974,268	2,974,268
충주고교생글로벌 (교육경비지원)	3,207,500	3,207,500	3,207,500	3,207,500	3,207,500
자연과학교육원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단재교육연수원	134,850	134,850	134,850	134,850	134,850
국제교육원	623,709	623,709	623,709	623,709	623,709
유아진흥교육원	9,000	9,000	9,000	9,000	9,000
특수교육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합계	6,582,267	9,321,317	9,321,317	9,321,317	9,321,317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62.5%, 교육경비지원 37.5%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6,582,267	9,321,317	9,321,317	9,321,317	9,321,317	43,867,535	
재원 조달	6,582,267	9,321,317	9,321,317	9,321,317	9,321,317	43,867,535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391,267	5,753,317	5,753,317	5,753,317	5,753,317	27,404,535
	특별교부금						
	교육경비 (지사채)	2,191,000	3,568,000	3,568,000	3,568,000	3,568,000	16,463,000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